

일반 규칙 157-D

(일반 규칙 157-C 을 대체한다)

캘리포니아주 공익사업위원회

(PUBLIC UTILITIES COMMISSION OF THE
STATE OF CALIFORNIA)

공익사업법 (5351 조부터 시작) 2 부 8 장에 따라 전세승객 운송회사의 영업을
관장하는 규칙과 규정.

2005 년 2 월 24 일에 채택되었고 그 날부터 유효함.

R.02-u8-002 내의 결정 05-02-033

개정은 2007 년 6 월 21 일부터 유효함

결의안 TL-19090

전세승객 운송회사

차례

1 부--일반 규정

- 1.01--짧은 제목
- 1.02--법규와 규칙과 규정의 언급
- 1.03--단수와 복수의 구성
- 1.04--"반드시 해야 하는 것-Shall" 과 "해도 되는 것-May"
- 1.05--책임 보험 필요 조건
- 1.06--차량법의 적용 가능성
- 1.07--위원회는 예외를 명령할 수도 있다
- 1.08--일반 규칙 시리즈 157, 차량법, 그리고 13 편의 적용 가능성

2 부--정의

- 2.01--"위원회"
- 2.02--"전세승객 운송회사", "TCP", "운송회사"
- 2.03--"전세승객용 차량", "차량"
- 2.04--"특수 식별 자동차 번호판"

- 2.05--"리무진"
- 2.06--"운전자-신청인"

3 부--일반 필요 조건 및 규제

- 3.01--미리 주선된 운송
- 3.02--공항에서의 영업
- 3.03--택시 운송 서비스는 허가되지 않음
- 3.04--하청 운송회사
- 3.05--허가의 갱신
- 3.06--상호
- 3.07--광고는 TCP 번호 또는 특수 식별 자동차 번호를 포함해야 한다

4 부--차량

- 4.01--차량 서류는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 4.02--영업 전의 안전에 관한 필요 조건
- 4.03--차량에 표시할 운송회사의 이름 및 차량 번호
- 4.04--차량에 표시할 TCP 번호
- 4.05--표시할 스티커
- 4.06--리무진용 특수 식별 자동차 번호판
- 4.07--식별하는 상징의 손상
- 4.08--P.U.C. 식별번호를 불법으로 표시하는 것
- 4.09--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 허가를 사용하는 것
- 4.10--차량의 판매 또는 양도

5 부--운전자

- 5.01--라이센스를 받을 운전자
- 5.02--운전자 기록
- 5.03--운전자의 자격
- 5.04--운전자의 알코올성 음료 및 마약 사용을 금지

6 부--기록 및 검사

- 6.01--전세승객에 대한 기록
- 6.02--검사

7 부--불만사항

7.01--운송회사는 불만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반드시 해야 한다

8 부--면제

8.01--서면으로 요청한다

9 부--청소년 캠프에서의 운송

9.01--비영리 청소년 캠프에 의한 운송

9.02--영리 청소년 캠프에 의한 운송

10 부--규제 약물 및 음주 검사 증명 프로그램

10.01--준수 대상자

10.02--규제 약물 및 음주 검사 프로그램이 필수임

10.03--고용전 검사의 필요 조건

10.04--검사 비용

10.05--검사의 비밀성

10.06--운전자-신청인 검사 결과는 위원회에 보고된다

1 부-일반 규정

1.01--짧은 제목. 이 규칙과 규정은 "일반 규칙 시리즈 157"로 부른다.

1.02--법규와 규칙과 규정의 언급. 법의 일부에 대한 언급이 있을 때에는 그 언급은 이전과 이후에 이루어진 모든 개정과 추가에 적용된다, 그리고 이 규칙과 규정의 일부에 대한 언급이 있을 때에는 그 언급은 이후에 이루어진 모든 개정과 추가에 적용된다.

1.03--단수와 복수의 구성. 단수는 복수를 포함하며 복수는 단수를 포함한다.

1.04--"반드시 해야 하는 것-Shall" 과 "해도 되는 것-May". "반드시 해야 하는 것-Shall"은 필수이며 "해도 되는 것-May"은 허용되는 것이다.

- 1.05--책임 보험 필요 조건-모든 전세승객 운송회사는 일반 규칙 시리즈 115 의 모든 법적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1.06--차량법의 적용 가능성. 모든 전세승객 운송회사와 소속 운전자들은 캘리포니아 차량법의 법적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1.07--위원회는 예외를 명령할 수도 있다. 위원회는 이 규칙과 규정으로부터의 예외 또는 특별 명령에 의한 추가의 또는 다른 규칙의 준수를 규정하거나 요구할 수도 있다.
- 1.08--일반 규칙 시리즈 157, 차량법, 그리고 13 편의 적용 가능성. 모든 전세승객 운송회사는 모든 운전자가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일반 규칙 시리즈 157 의 최신판과 캘리포니아 차량법 및 캘리포니아 규정집 13 편 차량 운송회사 안전에 관한 조항의 최신판 (하위장 4, 12 및 14 조 및 하위장 6.5, 1, 3, 6, 및 8 조)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부-정의

- 2.01--"위원회". "위원회" 는 캘리포니아주 공익사업위원회를 의미한다.
- 2.02--"전세승객 운송회사", "TCP", "운송회사". "전세승객 운송회사"의 정의는 공익사업법 5351-5360 조에 제시될 것이다. "TCP"라는 머릿글자는 "전세승객운송"을 의미한다. 이 일반규칙 내에서 "운송회사"라는 단어는 전세승객 운송회사를 의미한다.
- 2.03--"전세승객용 차량", "차량". "전세승객용 차량"은 전세승객을 위한 서비스에 사용되는 자동차이다. 이 일반규칙 내에서 "차량"이라는 단어는 전세승객용 차량을 의미한다.
- 2.04--"특수 식별 자동차 번호판". "특수 식별 자동차 번호판"은 공익사업법 5385.6 조에 따라서 캘리포니아주 차량 등록국이 리무진 소유주 또는 운영자에게 발급한 자동차 번호판이다.
- 2.05--"리무진". "리무진"은 이 주 내에서 미리 주선된 것을 기초로 하여 임대용 승객 운송에 사용되는, 운전자를 포함하여 최대 10 인의 승객의 좌석을 갖춘 표준 또는 연장된 길이의 세단형 자동차 또는 SUV 를 포함한다.

2.06--"운전자-신청인". 운전자-신청인은 허가하에 운영을 하도록 허가를 받은 차량의 운전자이면서 전세승객 운송회사의 영업허가를 신청한 자이다.

3 부--일반 필요 조건 및 규제

3.01--미리 주선된 운송. 공익사업법 5383 조에 정의된 대로 A 종과 B 종의 전세승객 운송회사와 공익사업법 5384(b)조 하의 허가(퍼밋)를 받은 운송회사는 미리 주선된 것을 기초로 하는 운송만 제공해야 한다. 운송을 주선하는 당사자는 차량을 독점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운전자는 다음을 포함하는 승객 명부를 소유해야 한다:

1. 운송회사 이름 및 TCP 번호.
2. 차량 번호판.
3. 운전자의 이름.
4. 전세를 요청하거나 주선하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
5. 전세를 주선한 시간과 날짜.
6. 운송이 전화 또는 계약서로 주선되었는 지의 여부.
7. 전세그룹 내 총 승객수.
8. 여행단 내의 최소 한 명의 승객의 이름 또는 여행단의 소속에 대한 신원 정보.
9. 출발지와 목적지.

요청에 따라, 운전자는 공익사업법 5371.4(h)조에 따라 위원회 또는 공항 경찰관, 또는 시, 카운티의 공무원, 또는 승객 명부의 검사 허가를 받은 시와 카운티에 승객 명부를 보여주어야 한다.

3.02--공항에서의 영업. 관련된 이 위원회와 공항당국 모두에 의해 허가된 영업이 아닌 한 운송회사는 공항 건물에서나 공항을 목적지로 하는 어떠한 영업도 해서는 안된다. 공항 당국의 규칙과 규정을 반복적으로 준수하지 않음은 위원회가 부여한 영업 허가의 정지나 취소를 초래할 수도 있다.

3.03--택시 운송 서비스는 허가되지 않음. 운송회사는 시 또는 카운티의 허가나 규제를 받는 택시 운송 서비스에 종사하도록 허가되지 않는다. 운송회사는 택시 위의 등 및/또는 택시 미터기를 갖춘 차량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 3.04--하청 운송회사. 운송회사는 그 두번째 운송회사가 전세승객 운송회사로서 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은 한, 차량과 운전자를 제공하는 다른 운송회사 (하청 운송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해서는 안된다. 영업하는 운송회사가 두번째 운송회사의 차량과 운전자를 이용하는 계약서는 기록된 문서로 입증되어야 하며 그 계약서는 운송회사의 이름, TCP 번호, 제공할 서비스를 포함해야 한다.
- 3.05--허가의 갱신. 각각의 운송회사는 증명서 또는 허가의 만료일 최소 3 개월 전에 갱신 신청서를 제출할 책임이 있다.
- 3.06--상호. 운송회사는 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상에 존재하지 않는 상표명, 상업상 이름, 상호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 3.07--광고는 TCP 번호 또는 특수 식별 자동차 번호를 포함해야 한다. 운송회사는 면허 또는 허가증(퍼밋)의 번호를 모든 문서 또는 구두로 된 광고, 방송, 또는 다른 대중을 위한 서비스의 공급에 명시해야 한다. 단 리무진을 운영하는 모든 전세승객 운송회사들은 대신 그 특수 식별 자동차 번호를 명시할 수도 있다. 면허 또는 허가증(퍼밋)의 번호는 앞말 "TCP",와 제공하는 운송서비스의 허가증 또는 당국에 따라 끝말 "A", "B", "C", "S", "P", 그리고/또는 "z" 로 구성되며 (제각기 "A"종 면허, "B"종 면허, "C"종 면허, 왕복 관광 허가증(퍼밋), 전세승객 허가증(퍼밋), 그리고 특수 운송회사 허가증(퍼밋)이다).

4 부--차량

- 4.01--차량 서류는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모든 운송회사는 위원회에 제출하는 서류에, 각 면허와 허가 하에 사용하는 모든 차량의 목록 (소유 또는 리스)을 유지해야 한다. 각 차량에 대한 정보는 제조회사, 차모델 연도, 차체 고유 번호(V.I.N.), 좌석수(운전자를 포함해서), 차체 종류 또는 모델의 명칭, 차량의 소유 또는 리스의 여부, 장애인이 탑승할 수 있는 지 여부, 그리고 자동차번호를 포함한다. 차량 목록에의 추가와 삭제는 그 차량이 서비스를 시작하거나 끝내는 날짜로부터 10 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4.02--영업 전의 안전에 관한 필요 조건. 각 면허 또는 허가증(퍼밋)하에 운전되는 모든 차량은 캘리포니아 규정집 13 편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및 자동차 운송회사 안전에 관한 조항의 필요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모든 운송회사는 모든 차량을 검사하고 그 검사에 대한 적당한 문서 증거를 유지해야 한다.

4.03--차량에 표시할 운송회사의 이름 및 차량 번호. 차량의 각 면에 운송회사의 이름이나 상표명이 그려지거나 표시되지 않는 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모든 운송회사는 각 차량에 식별 번호를 배당해야 한다. 그러한 번호는 각 차량외부의 뒷면과 각 면의 표면에 그리거나 다른 방법으로 영구적으로 붙여야 한다. 운송회사의 이름과 차량 번호는 낮시간에 50 피트의 거리에서 읽을 수 있게 글씨가 충분히 크고 색상이 대비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조의 법적 규정은 운송회사가 30 일 미만의 기간으로 임시 리스한 차량 또는 운전자를 포함하여 최대 15 인을 수송하도록 설계된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04--차량에 표시할 TCP 번호. 위원회가 운송회사의 허가에 배당한 번호는 번호전체가 앞말 "TCP", 허가번호및 허가의 끝말 "A", "B", "C", "S", "P" 그리고/또는 "Z"를 포함하여 모든 전세승객용 차량에 표시되어야 한다. (제각기 "A"종 면허, "B"종 면허, "C"종 면허, 왕복 관광 허가증(퍼밋), 전세승객 허가증(퍼밋), 그리고 특수 운송회사 허가증(퍼밋)을 의미한다). 글자 및 숫자로 된 상징의 크기와 배치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식별 상징은 배경에 색상이 뚜렷하게 대비되어야 하며 그 크기와 모양은 50 피트의 거리에서 낮시간에 손쉽게 읽을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그 식별 상징을 앞/뒷범퍼에 표시해야 하는, 운전자를 포함하여 최대 15 인을 수송하도록 설계된 차량들을 제외하고, 상징들은 차량의 각 면에 표시해야 한다.

그러한 ICC 영업 허가가 주연합 및 외국 고속도로 운송회사 등록법(PU 법 3901 조부터 시작하여)에 따라 이 위원회에 등록되었다면 운송회사가 표시하는 식별 상징은 각 주연합의 통상 위원회(ICC)의 관할권의 지배를 받으며 위에 규정한 필수 요건을 대신하여 소용이 된다.

- 4.05--표시할 스티커. 운전자를 포함하여 최대 8 인을 수송하도록 설계된 차량은 위원회가 발급한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운전자를 포함해서 9 인에서 15 인의 좌석수를 가진 차량은 안전 및 집행부서의 면허과에 요청을 하면 발급되는, 위원회가 발급한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위원회가 발급한 모든 스티커는 차량의 뒷범퍼의 오른쪽 하단의 구석에 붙여야 한다.
- 4.06--리무진용 특수 식별 자동차 번호판. 전세승객 운송회사의 영업 리무진은 공익사업법 5385.6 조에 따라 차량등록국이 발급한 특수 식별 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특수 식별 자동차 번호판은 4.05 부의 스티커 필수 요건 대신에 부착되어야 한다. 전세승객 운송회사의 허가증 또는 면허의 취소, 정지 또는 철회시 운송회사는 즉시 특수 식별 자동차 번호판을 위원회에 넘겨주어야 한다. 이 부는 1996 년 2 월 4 일부터 유효하다.
- 4.07--식별 상징의 손상. 차량상의 식별되는 이름 및 번호에 야기된 손상을 즉시 복구하거나 교체하는 것은 운송회사의 책임이다.
- 4.08-- P.U.C. 식별번호를 불법으로 표시하는 것. 허가증 또는 면허의 취소 또는 종결이 된 즉시 그 허가증 또는 면허로부터 부여받은 TCP 번호는 모든 차량에서 제거되어야 한다. 만약 새로운 영업 허가가 나중에 부여되면 적절하게 식별되도록 하는 것은 운송회사의 책임이다.
- 4.09--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 허가를 사용하는 것. 운송회사는 고의로 타인(타회사)이 영업허가, TCP 번호(들) 또는 특수 식별 번호판(들)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 4.10-- 차량의 판매 또는 양도. 차량이 판매되거나 양도될 때 모든 면허 또는 허가증 번호, 식별 상징, 및 모든 식별 자동차 번호판을 제거하는 것은 운송회사의 책임이다.

PART 5--운전자들

- 5.01--라이센스를 받을 운전자. 모든 전세승객용 차량 운전자들은 캘리포니아 차량법 하에 필수인 면허증을 받아야 하며 캘리포니아 규정집 13 편 자동차 운송회사 안전에 관한 조의 운전자에 대한 법적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5.02--운전자 기록. 모든 운송회사는 차량법 1808.1 조에 정의된 차량등록국의 "Pull Notice Program" 에 등록해야 한다. 전세승객용 차량은 차량법 12810.5 조 하에 부주의한 운전자로 추정되는 운전자에 의해 운전되어서는 안된다.

5.03--운전자의 자격. 차량의 모든 운전자는 허가증(퍼밋)/면허증의 소지자이거나 영업하는 운송회사의 완전한 감독, 지시 및 통제하에 있어야 한다:

- A. 허가증/면허증 소지자의 종업원; 또는,
- B. 하청 운송회사의 종업원; 또는,
- C. 전세승객 운송회사 허가증을 보유하고 하청 운송회사로 영업하는 독립 소유자-운전자.

5.04--운전자의 알코올성 음료 및 마약 사용을 금지. 모든 운전자들은 연방규정법 49 편 392.4 및 392.5 부의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 규칙은 어느 정도는 근무중에 마약을 하거나 또는 알코올성 음료를 마시거나 그 영향을 받는 것을 금지하며 운송회사가 운전자가 근무중에 마약을 하거나 그 영향을 받는 것 또는 알코올성 음료를 마시거나 그 영향을 받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6 부--기록 및 검사

6.01--전세승객에 대한 기록. 모든 운송회사는 3.01 조에 기술된 승객 명부를 포함하여 수행하는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반영하는 일련의 기록을 만들어서 사무실에 유지해야 한다. 모든 운송회사는 또한 모든 리스및 하청 운송회사 계약서의 사본을 유지해야 하며 정비및 안전 기록, (4.01 및 4.02 조에서 필수로 요구되는 기록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하지는 않는다), 운전자 기록 (5.02 조에서 필수로 요구되는 기록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소비자 불만사항 기록(7.01 조에서 필수로 요구되는 기록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하지는 않는다)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한 기록을 최소 3 년의 기간동안 유지해야 한다.

6.02--검사. 이 위원회로부터 정당하게 공인된 대표자는 항상 권리를 가지며 계좌, 장부, 서류 및 문서를 검사할 목적으로 그리고 이러한 규칙을 준수하고 지켰는지의 여부를 확실히 하기 위해 차량 또는 시설에 들어가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 모든 차량의 소유자, 운영자 또는 운전자는 그러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이 위원회의 정당하게 공인된 대표자들에게 모든 합리적인 기회와 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7 부--불만사항

7.01--운송회사는 불만사항에 답변을 반드시 해야 한다. 운송회사가 제공하거나 주선한 운송 서비스에 관련한 불평서한에 모든 운송회사는 15 일 이내에 답변을 해야 한다. 운송회사는 15 일 이내에, 불만사항에 관한 위원회 직원의 문의에 답변을 해야 하며 요청된 편지 및 기록의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8 부--면제

8.01--서면으로 요청한다. 만약, 특정한 경우에, 이러한 규칙과 규정으로부터 면제되기를 원한다면, 그러한 면제를 위해 서면으로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요청은 현존하는 조건 및 그 면제를 정당화하는 데 필요한 이유에 대한 전체의 진술서를 동반해야 한다. 면제가 허용되는 경우 요청서가 다루는 그 특정의 경우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9 부--청소년 캠프에서의 운송

9.01--비영리 청소년 캠프에 의한 운송. 청소년 캠프의 운영에서 흔히 있는 비영리 기관에 의해 수행되는 운송은 PU 법 5353(f) 조에서 제시된 예외사항 하에서 전세승객 운송회사법, 공익사업(PU)법 5351 조 이하 참조의 대상이 아니다.

9.02--영리를 목적으로 한 청소년 캠프에 의한 운송. 청소년 캠프의 운영에서 흔히 있는 영리 기관에 의해 수행되는 운송은 승객 전세승객 운송회사법, 공익사업법 5351 조 이하 참조의 대상이다.

10 부--규제 약물 및 음주 검사 증명 프로그램

10.01--준수해야 하는 자. 운전자를 포함하여 15 인이하의 좌석수를 가진 차량을 운전할 운전자를 고용하기로 작성한 모든 전세승객 운송회사인 신청자들은 모든 그러한 운전자들이 이미 연방 검사 규정에 의해 다루어지지 않은 한 이 일반 규칙에 의해 필수로 요구되는 그 운전자들을 위한 필수 규제 약물 및 음주 검사 증명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운전자를 포함하여 16 인이상의 좌석수를 가진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를 고용하는 전세승객 운송회사는 그 운전자들을 위한 규제약물 및 음주검사에 관련한 연방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0.02--규제 약물 및 음주 검사 프로그램이 필수임. 이 일반 규칙을 준수해야 하는 모든 신청인은 이 문서에서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40 부와 연방 규정법(CFR)49 편 40 부와 382 부에서 필수로 요구되는 검사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이 위원회의 프로그램의 목적을 위해, 운전자를 포함하여 15 인 이하의 좌석을 갖춘 차량들은 상업용 차량으로 고려된다. 예를 들면, 이 위원회의 프로그램의 목적을 위해 "안전에 민감한 기능"이 무엇인 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끼친다.

음성으로 나타난 음주검사 결과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2 퍼센트보다 낮으며 운전자는 검사시에 그 장소에서 유효한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을 제시해야 한다.

모든 그러한 신청인은 고용전 음주 검사가 필수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 고용전 검사(382.301 부), 사고후 검사(382.303 부), 무작위 검사(382.305 부), 합리적 의심에 기인한 검사(382.307 부), 이후의 검사(382.311 부), 그리고 근무복귀 검사(382.309 부)를 수행해야 한다.

그러한 각각의 신청인은 검사의 필요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과 관련한 고용주의 정책과 절차뿐 아니라 CFR 의 49 편 382 부 및 이 일반 규칙의 필요 조건을 설명하는 교육자료(382.601 부)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그러한 신청인들은 종업원들에게 (382.605 부)술의 오용 및 규제 약물의 사용에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보의 이용 가능성을 조언해야 한다.

그러한 신청인들은 감독자들이 운전자가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존재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한다.(382.603 부).

그러한 신청인들은 검사를 받는 종업원들을 식별하고 특정한 종류의 검사들을 요청하는 "연방 마약 검사 관리 및 통제 양식" 및 "DOT 호흡 알코올 검사 양식"과 매우 유사하나 구별되는 관리 및 통제 양식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49 CFR 40.23 및 40.59 부).

10.03--고용전 검사의 필요 조건. 운전자가 이전에 한 음성반응의 결과는 이후의 고용을 위한 고용전 검사 필요 조건, 또는 정기적 검사 이외에 프로그램 하에 요구되는 검사 필요 조건을 충족시킨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 (음성의 검사 결과는 만약 운전자가 음성반응 결과 이후에 양성으로 판명되지 않았다면 정기 검사에 대한 필요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일 년동안 승인된다.)

10.04--검사 비용. 신청인들은 검사 프로그램에 준수하는 것에 책임을 지며 고용주는 양성반응이 나온 종업원이 재활 및 근무복귀 및 후속 검사의 비용을 내는 것을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검사 프로그램의 모든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10.05--검사의 비밀성. 모든 검사 결과는 비밀이며 법에 의하여 허가되거나 요구되지 않는 한 운전자의 동의없이 공개되지 않을 수도 있다. 종업원 검사 기록의 공개 및 비밀성에 관련한 49 CFR 40.35부, 40.81, 382.405 및 382.413 부는 규칙을 열거한다. 위원회 검사 프로그램 하의 필수로 요구되는 검사의 결과는 49 CFR 40부 및 382부에 상세히 열거된 것과 동일한 상황 하에서 공개될 수도 있다. 위원회는 요청시 검사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복사해 줄 것을 검사실에 요구할 수도 있다. 양성 반응의 어떠한 증거도 규제약물의 불법 소지, 판매 또는 유통에 관한 형사 기소에 있어서 증거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

10.06--운전자-신청인 검사 결과는 위원회에 보고된다. 운전자이면서 동시에 신청인인 자에게 이루어진 검사 결과는 49 CFR 382.407 부 요건에 따라 직접 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신규의 영업 허가를 신청한 운전자-신청인은 운전자-신청인이 등록된 컨소시엄의 주요 의학적 평가관 또는 관리자가 직접 위원회에 자신의 고용전 규제 약물 검사 결과의 사본을 보내도록 해야 한다. 영업 허가의 갱신을 신청하는 운전자-신청인은 운전자-신청인이 등록된 컨소시엄의 주요 의학적 평가관 또는 관리자가 직접 위원회에 자신의 가장 최근의 규제 약물 및 음주검사 결과의 사본을 보내도록 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서 2007 년 6 월 21 일에 승인되었다.

캘리포니아 주 공익사업위원회


By Paul Clanton
Executive Director

